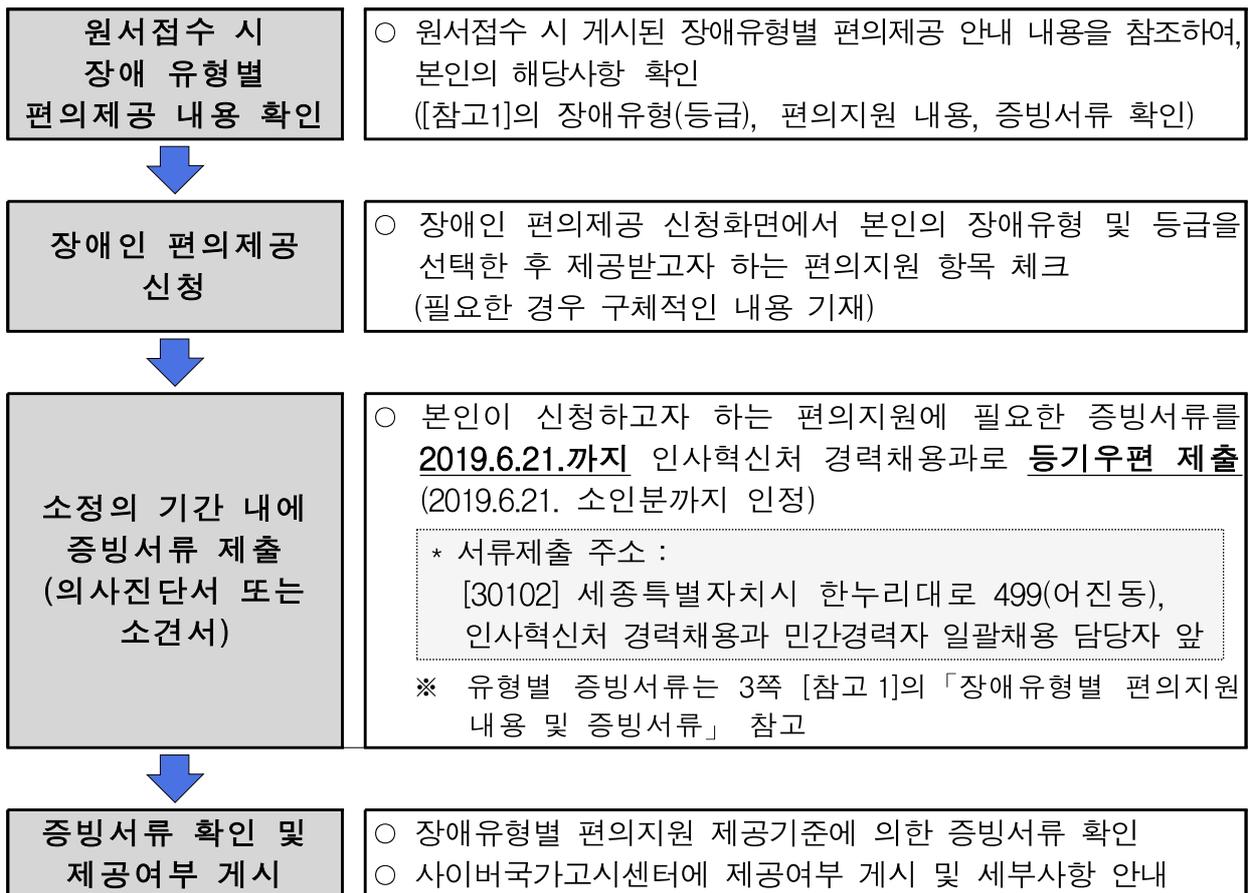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9.6.17.)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2 편의지원 신청 방법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 ※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참고 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5, 8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1.5배) · 답안지 대필	없음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하지	1급~6급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뇌병변장애	공통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1.5배) · 답안지 대필	없음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4급~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1.5배) · 답안지 대필	의사 진단서 1부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장애	공통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1급~2급	· 시험시간 연장(1.7배) · 음성지원컴퓨터	없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컴퓨터
		3급2호 및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1부	
		3급~4급 5급1호	· 시험시간 연장(1.5배)	없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 시험시간 연장(1.5배)	의사 진단서 1부	
	5급2호 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청각장애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검토후 안내)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1부	· 높낮이 조절책상 · 전담도우미 지원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A2 규격의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9.6.17.) 기준 2년 이내(2017.6.18. 이후)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